●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일본의 도서관 관계 법규

도서관법

1950년 4월 30일 법률 제118호 공포
1967년 8월 1일 법률 제120호 최종개정

제1장 총 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의 정신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해서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등에 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지방공공단체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1894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하는 것(학교에 부속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항의 도서관중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도서관을 공립도서관이라하고 일본적십자사 또는 민법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하는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이라 한다.

(도서관의 봉사)

제3조 도서관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방의 사정 및 일반공중의 희망에 따르고 더우기 학교교육을 원조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대략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향토자료 지방행정자료 미술품 레코드 필름의 수집에도 충분히 유의해서 도서, 기록, 시청각 교육의 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

② 도서관 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하게 하고 또 그 목록을 정리할 것

③ 도서관의 직원이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며 그 이용을 위한 상담에 응할 수 있게 할 것

④ 다른 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부설하는 도서실 및 학교에 부설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협력하고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를 행할 것

⑤ 분관, 열람소, 대본소 등을 설치하고 또 자동차문고, 대출문고의 순회를 행할 것

⑥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영사회, 자료전시회 등을 주최하고 또 그 장려를 행할 것

⑦ 시사에 관한 정보 및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또 제공할 것

⑧ 학교, 박물관, 공민관, 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협력할 것

(사서 및 사서보)

제4조 도서관에 두는 전문직원을 사서와 사서보라고 칭한다.

2.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한다.

3.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

제5조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는 사서로 될 자격을 갖는다.

①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의 강습을 수료한 자

②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③ 3년 이상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아니면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의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의 강습을 수료한 자

2.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는 사서보로 될 자격을 갖는다.

① 사서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

제6조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대신의 위촉을 받아서 행한다.

2.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에 관하여 이수해야 할 과목, 단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단, 그 이수해야 할 단위수는 15단위를 내려가서는 안된다.

제7조 (삭 제) (1956년 법 163)

(협력의뢰)

제8조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위원회는 당해 都, 道, 府, 縣내의 도서관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특별구를 포함 한다. 이하 동일), 町, 村의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종합목록의 작성, 대출문고의 순회,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등에 관하여 협력을 구할 수 있다.

(공공 출판물의 수집)

제9조 정부는 都, 道, 府, 縣이 설치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관보 기타 일반 공중에 대한 공보용으로 제공되는 인쇄국 발행의 간행물을 2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공립도서관의 요구에 응해서 이것에 대하여 각각 발생하는 간행물 기타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공립도서관

(설치)

제10조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1956년 법 120)

(보 고)

제12조 都, 道, 府, 縣의 교육위원회는 문부대신의 요구에 응해서 이에 대하여 당해 都, 道, 府, 縣 및 당해 都, 道, 府, 縣 내의 市, 町, 村이 설치하는 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설치자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직 원)

제13조 공립도서관의 관장 및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직원,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을 둔다.

2. 관장은 관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여 도서관봉사의 기능달성에 힘써야 한다.

3. 국가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립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자는 사서의 자격을 가진자라야 한다. 단 당해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자 중 都, 道, 府, 縣 또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 자 및 지정도시이외의 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 자는 그 위에 각각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도서관의 관장 또는 사서 (국립 국회도서관장 또는 대학 아니면 고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이들 직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자라야 한다.

(도서관 협의회)

제14조 공립도서관에 도서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함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행하는 도서관 봉사에 관하여 관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5조 도서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①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설치된 학교에서 추천한 당해 학교의 대표자

②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갖는 사회교육관계

단체 (사회교육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사회교육관계 단체를 말한다.)가 선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한 당해 단체의 대표자

③ 사회교육위원

④ 공민관 운영 심의회의 위원

⑤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제16조 도서관 협의회의 설치, 그 위원의 정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

2. 사회교육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서관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입관료 등)

제17조 공공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라도 징수해서는 안된다.

(공립도서관의 기준)

제18조 문부대신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제시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에 대하여 알리는 것으로 한다.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공립도서관의 기준)

제19조 국가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최저의 기준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의 보조)

제20조 국가는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제21조 문부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보조금을 받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도서관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의 기준에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달하여 있는 경우에만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해야 한다.

제22조 (삭 제) (1959년 법158)

제23조 국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의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함과 동시에 이미 교부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반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① 도서관이 그 법률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지방공공단체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③ 지방공공단체가 허위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3장 사립도서관

제24조 (삭 제) (1967년 법120)

(都, 道, 府, 縣의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제25조 都, 道, 府, 縣의 교육위원회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지도자료의 작성(作成)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都, 道, 府, 縣의 교육위원회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해서 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제2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의 사업에 간섭을 가하거나 또는 도서관을 설치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제2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해서 필요한 물자의 확보에 관하여 원조를 할 수 있다.

(입관료 등)

제28조 사립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 할 수 있다.

(도서관 동종 시설)

제29조 도서관과 동종의 시설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시설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 초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 규정은 19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도서관령(1933년 칙령 제175호)공립도서관 직원령(1933년 칙령 제176호) 및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 규정(1936년 문부성령 제18호)은 폐지한다.

신체장애자복지법(초)

1949년 12월 26일 법률 제283호 공포
1973년 7월 27일 법률 제67호 최종개정

제5조 이 법률에서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이란 (중략)점자도서관 및 점자출판시설을 말한다.

제33조 점자도서관은 무료 또는 저액의 요금으로 점자간행물을 맹인의 요구에 응하여 열람시키는 시설이다.

제34조 점자출판시설은 무료 또는 저액의 요금으로 점자간행물을 출판하는 시설이다.

대학설치기준(초)

1956년 10월 22일 문부성령 제28호
최종개정 1982년 3월 23일 문부성령 제1호

학교교육법 제3조, 제8조, 제63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취 지)

제1조 대학설치기준은 이 성령(省令)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성령(省令)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은 대학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저기준으로 한다.

3. 대학은 이 성령(省令)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이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학부 이외의 기본조직)

제4조의2 학교교육법 (1947년 법률 제26호)제53조 단서에 규정하는 학부 이외의 교육연구상의 기본이 되는 조직(이하「학부 이외의 기본조직」이라 한다)은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교육연구상 적당한 규모내용을 갖일 것.

② 교육연구상 필요한 교원조직, 시설설비 기타 제조건을 갖일 것.

③ 교육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게 알맞는 운영구조를 갖일 것.

2. 학부 이외의 기본조직에 있어서 전임교원수, 교지와 교사의 면적, 도서와 학술잡지의 책수 및 종류수 그리고 학부 이외의 기본조직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부속시설기준은 당해 학부 이외의 기본조직의 교육연구상 분야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학부에 관련된 이것들의 기준에 준해야한다.

(교사 등 시설)

제37조 대학은 그 조직과 규모에 따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춘 교사를 가져야 한다.

③ 도서관, 의무실, 학생자습실, 학생대기실

④ 도서관의 열람실에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의 좌석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 및 학술잡지)

제40조 대학은 수업과목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책수 및 종류수의 도서 및 학술잡지(마이크로 필름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를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갖추어야 한다.

① 일반교육과목에 관한 도서

인문, 사회 및 자연의 각분야에 대하여 각각 800 책 이상, 합계 3,000 책 이상

② 외국어 과목에 관한 도서

한 외국어에 대하여 1,000 책 이상

③ 보건체육과목에 관한 도서 300 책 이상

④ 전문교육과목에 관한 도서 및 학술잡지

학 부 명	도 서 책 수	2이상의 학과로 조직하는 경우의 1학과의 도서 책수	학술잡지종류수
문 학 부	8,000 이상	2,000 이상	30 이상
법 학 부	10,000 〃	5,000 〃	50 〃
경 제 학 부	10,000 〃	5,000 〃	50 〃
상 학 부	10,000 〃	5,000 〃	50 〃
이 학 부	8,000 〃	2,000 〃	50 〃
의 학 부	30,000 〃	—	300 〃
치 학 부	10,000 〃	—	200 〃
공 학 부	8,000 〃	2,000 〃	50 〃
농 학 부	8,000 〃	2,000 〃	50 〃
약학에 관한 학부	4,000 〃	2,000 〃	30 〃
가정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미술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음악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체육에 관한 학부	5,000 〃	2,000 〃	20 〃

비고 : 이 표에 실린 학부 이외의 학부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도서 및 학술잡지의 책수 및 종류에 대해서는 당해 학부에 유사한 이 표에 실린 학부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기대학설치기준(초)

1975년 4월 28일 문부성령 제21호

(교사 등)

제25조 교사에는 단기대학의 조직 및 규모에 따라 적어도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장실, 회의실, 사무실
2. 교실(강의실, 연습실, 실험실, 실습실 등)연구실
3. 도서관, 보건실

(도서 및 학술잡지)

제29조 단기대학에는 수험과목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5조에 정하는 책수 및 종류수 이상의 도서 및 학술잡지(마이크로 필름 등을 포함, 동표와 같다.)를 계통적으로 정리하

며 갖추어야 한다.

(부속 시설)

제30조 단기대학에는 학과의 종류에 따라 교육연구상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규모내용을 갖춘 부속시설을 둔다.

(사무 조직)

제31조 단기대학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임 직원을 두는 적당한 사무조직을 두어야 한다.

(도서관의 전임직원)

제33조 도서관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전임직원을 두도록 한다.

별표 제5(제29조 관계)

전문교육과목에 관한 도서의 책수 및 학술잡지 종류수의 표

학과에 속하는 분야의 구분	1학과의 도서책수	1학과의 학술잡지의 종류수
문학관계 또는 종교관계	4,000	15
법률관계, 상업관계 또는 경제관계	5,000	25
교양관계	5,000	25
가정관계	3,000	10
교원양성관계	4,000	15
공업관계 또는 농업관계	4,000	25
의료기술관계 또는 보건관계	4,000	25
간호관계	3,000	20
체육관계	3,000	10
미술관계	3,000	10
음악관계	3,000	10

비고 :

① 이 표에 정하는 도서의 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는 학과에 전공과정을 두는 경우는 전공과정도서의 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로 한다.

② 동일분야에 속하는 학과를 2 이상 두는 경우에는 1학과에 대해서는 이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 학과에 대해서는 이표에 정하는 도서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의 각각 3할

이상으로 한다.

③ 제15조 제2항의 단기대학 학과에 대해서는 이 표에 정하는 도서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에 각각 3할 이상을 더한 것으로 한다.

④ 동일분야에 속하는 학과를 2 이상 둘 경우 제15조 제2항의 단기대의 학과를 포함할 때에는 1의 동항의 학과에 대해서는 이 표에 정하는 도서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에 각각 3할 이상을 더한 것으로 하고 타 학과에 대해서는 이 표에 정하는 도서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의 각각 3할 이상으로 한다.

⑤ 이 표에 실린 분야 이외의 분야에 속하는 학과는 도서책수 및 학술잡지의 종류수에 대해서는 당해 학과분야와 유사한 이 표에 실린 분야의 예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따로 정한다.

고등전문학교 설치기준(초)

1961년 8월31일 문부성령 제23호

최종개정 1976년 7월24일 문부성령 제32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

제2조 고등전문학교는 그 조직편제, 시설, 설치 등이 이 성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보다 낮은 상태가 되지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항상 그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등전문학교는 그 교육내용을 학술의 직전에 즉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가 행해지도록 힘쓰게 한다.

(교사 등)

제17조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도서관, 보건실, 학생대기실

(도서 및 학술잡지)

제20조 고등전문학교에는 학과종류, 교원수 및 학생수에 따라서 필요한 종류 및 수의 도서 및 학술잡지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것을 포함)를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갖추어야 한다.

의학, 치학관계 대학원 설치심사 기준요령(초)

1954년 7월19일 대학설치 심의회 결정

4. 의학의 연구과에서는 전항 외에 연구과의 기초가 되는 학부의 강좌의 조직, 교사 병원의 시설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도서, 기계, 기구 및 표본은 연구과 학생을 위해 더욱 정비를 필요로 하나 특히 도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준에 의한다.

가. 전문도서 30,000책 이상

나. 학술잡지 300종 이상(이 중 반수 이상은 외국잡지)

약학관계학부 도서관 설치기준

1981년 5월18일

일본 약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정

1. 취지

본 기준은 약학의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학관계학부 도서관의 최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학관계학부 도서관이란 단과 대학도서관, 종합대학학부 또는 단과의 도서관, 도서실을 말한다.

2. 조직 및 운영

1) 도서관의 조직은 규모에 따라 또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관장(종합대학에서는 분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은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서 이를 맡긴다.

3) 직원수는 학생총수, 연간증가책수, 장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생 300명까지 대학원생 100명까지 연간증가책수 1,000책(또는 장서책수 10,000책)까지에 대하여 4명으로 하고 학생수 300명, 대학원생 100명, 연간증가책수 500책(또는 장서책수 10,000책)을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증가해야 한다.

4) 직원중에는 사서와 약학교육을 받은 자 혹은 약학관계의 도서자료나 정보과학의 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

5) 도서관에는 도서위원회를 둔다. 도서위원회는 도서관 행정의 근본방침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3. 시설 및 설비

1) 도서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 및 구조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2) 도서관에는 열람실, 서고, 사무실을 포함하여 자료의 정리보관, 이용 및 정보의 처리검색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갖춘다.

3) 제시설은 이용자, 관원 및 자료의 수량과 그 활용에 따른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① 열람실은 학생총수의 20% 이상의 수용력을 가지고 1인당 2m 이상의 바닥면적을 필요로 한다.

② 서가수용력은 시설시에 있어서 기준책수 및 20년간의 증가도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후는 항상 5년 이상의 증가도서 수용여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③ 사무실은 최저 50m로 하고 직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10m 이상을 필요로 한다.

④ 시설은 도서관을 기능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진전에 따른 설비기구가 정비되어야 한다.

4. 도서 자료

1) 도서관은 대학의 특색을 살리어 약학 교육과 연구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내용의 도서자료를 비치하고 그 자료중에는 기본도서, 지정도서, 주요학술 잡지 등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서 및 학술 잡지는 학생입학정원 80명 이하인 경우에는(일반교육관계도서 5,300책 이상), 전문교육 관계도서는 약학관계 도서와 관련분야의 도서를 포함해서 8,000책 이상을 비치하고 또한 수준 높은 신간도서를 계통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학술잡지는 150종류(반수 이상은 양서) 이상을 계속 구입하고 주요잡지의 빽넘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입학정원 80명을 초과할 때에는 학생입학정원 40명이 증가할 때마다 전문교육관계도서 800책을 증가해야 한다.

4) 일반교육 관계도서는 학생수에 따라 대략 전문교육관계 도서의 증가의 비율에 의해 증가해야 한다.

5) 도서는 매년 다음 표준에 의해 증가해야 한다.

① 주요학과목-과목당 적어도 연간 25책 이상

② 학생입학정원 1명당 적어도 연간 1책 이상(일반교육 전문교육 관계를 포함)

6) 도서관은 시청각 교재의 시청에 필요한 교제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5. 운용 활동

도서관은 그의 도서자료의 운용 또는 정보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소장자료의 정비와 운용의 개선, 목록의 정비, 배가, 전시, 출납의 합리화

2) 참고 업무

3) 자료 이용을 위한 기기의 설치

4) 학술정보의 수집, 관리, 검색 및 홍보

5) 타 도서관 및 정보기관과의 연계 및 협동사업

6. 연구 활동

도서관은 대학의 연구활동의 일익으로서 약학자료 및 약학정보의 정보과학적연구를 행해야 한다.

7. 경비

이 기준의 취지가 달성되려면 충분한 도서구입비, 설비비, 제본비 기타 업무비 및 연구비와 인건비가 계산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법

1953년 8월8일 법률 제185호
최종개정 1966년 6월30일 법률 제98호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적인 설비임을 감안하여 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그리하여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학교 도서관」이란

소학교 (맹인학교, 농인학교 및 양호학교의 소학부를 포함한다.)

중학교 (맹인학교, 농인학교 및 양호학교의 중학부를 포함한다.)

고등학교(맹인학교, 농인학교 및 양호학교의 고등부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고 한다.)에 있어서 도서, 시청각교육의 자료, 기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이하「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여 이를 아동 혹은 생도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의 전개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 혹은 생도의 건전한 교양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의 설비를 말한다.

(설치의무)

제3조 학교에는 학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의 운영)

제4조 1. 학교는 대략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학교 도서관을 아동 혹은 생도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한다.

1)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 혹은 생도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할 것.
2) 도서관 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하게 하여 목록을 정비할 것.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영사회 자료전시회 등을 행할 것.
4) 도서관 자료의 이용 기타 학교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아동 혹은 생도에 대하여 지도할 것
5) 타 학교의 학교 도서관,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할 것.

2. 학교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반공중에게 이용시킬 수 있다.

(사서 교사)

제5조 1.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충당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사는 사서교사의 강습을 수료한자 이어야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한 사서교사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대신의 위촉을 받아 행한다.

4. 전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서교사의 강습에 관하여 이수해야 할 과목 및 단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설치자의 의무)

제6조 학교의 설치자는 이 법률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그가 설치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설비하고 충실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임무)

제7조 국가는 학교도서관을 정비하고 그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정비 및 충실과 사서교사 양성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
2. 학교도서관 (국립학교의 학교도서관은 제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 및 권고를 줄것.
3. 전 각호에 들은것 외에 학교 도서관의 정비 및 충실을 위한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2장 삭제(1966년 법률 98)

제3장 국가의 부담

제13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고등학교(맹인학교, 농인학교 및 양호학교의 고등부를 포함)의 학교도서관 설비 또는 도서가 정령(政令)으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준에까지 높이고자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부담금의 반환 등)

제14조 문부대신은 전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연도에 있어서 그 후의 부담금의 교부를 중지하고 이미 교부한 당해 연도의 부담금을 반환토록 한다.

1.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의거한 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부담금의 교부의 조건에 위반했을 때
3. 허위방법에 의하여 부담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정령에의 위임)

제15조 전 2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초)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5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서교사의 설치특례)

2. 학교에는 당분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사서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부 칙(1958년 5월6일 법률136)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195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1957년도 까지의 국고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년 2월9일 법률 제5호

최종개정 1955년 1월28일 법률 제3호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에 서서 헌법이 서약하는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여 이에 설립된다.

제1장 설립과 목적

제1조 이 법률에 의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법률을 국립국회도서관법이라 칭한다.

제2조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위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줌과 아울러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대하여 나아가서 일본 국민에 대하여 이 법률이 규정하는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의 도서관과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부 도서관 및 금후 설립되어지는 지부 도서관으로 구성한다.

제2장 관장

제4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장의 관장은 1명으로 한다. 관장은 양의원의 의장이 양의원의 의원,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명한다.

② 관장은 직무의 집행상 과실이 없는 한 재직한다. 관장은 정치활동을 삼가하여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파면되지는 않는다.

관장은 양의원의 의장의 공동제의에 의한다면 파면될 수 있다.

관장의 대우는 국무대신과 동등한다.

제5조 ① 관장은 도서관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직원과 고용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관장은 사전에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후에 양의원의 위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도서관 관리상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공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관장은 매회계년도 초에 양의원의 의장에 대하여 전회계년도의 도서관 경영 및 재정 상태에 관하여 보고 한다.

제7조 관장은 일년을 넘기지 않게 정기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목록 혹은 색인의 출판을 해야한다.

제8조 관장은 출판에 적합한 양식으로 일본의 법률의 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부관장 및 기타 직원 및 고용인

제9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부관장은 1명으로 한다. 부관장은 관장이 양의원의 의장 승인을 얻어 이를 임명한다.

부관장은 도서관 사무에 대해 관장을 보좌한다.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관장이 없을 때에 부관장이 관장직무를 행한다. 부관장의 대우는 각성 차관과 동등하다.

제10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기타 직원 및 고용원은 직무 수행에 적당한 자에 대해 국회직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이를 임명한다. 그 직원 및 고용원의 직책은 관장이 이를 정한다.

② 도서관의 직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또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단, 행정 또는 사법 각 부문의 지부도서관의 관원이 되는 것은 이는 지장이 없다.

제4장 의원운영위원회 및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제11조 ① 양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이를 개최하여 도서관의 경과에 관한 관장의 보고, 도서관의 관리상 관장이 정한 제규정, 도서관의 예산 및 기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 각 위원의 의원운영위원장은 전 항의 심사결과를 소속의원에 보고한다.

제12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에 연락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이를 조직하고 각 위원의 의원운영위원장 최고 재판소 장관이 임명하는 최고 재판소 재판관 1명 및 내각총리 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 1명을 이에 충당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가담할 수 없다.

제13조 연락조정위원회는 양위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대한 국립국회도서관의 봉사 개선에 대해 권고한다.

제5장 도서관의 부국

제14조 관장은 관리사무를 효율화 하는데 필요한 부국 및 기타의 단위를 도서관에 둔다.

제6장 조사 및 입법고사국

제15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조사 및 입법고사국이란 명칭의 1국을 둔다. 이 국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구에 응하여 양의원의 위원회에 현안 중의 법안 또는 내각으로부터 국회에 송부되어진 안건을 분석 또는 평가하여 양의원의 위원회에 진언하고 보좌함과 동시에 타당한 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하여 원조할 것.
2. 요구에 응하여 또는 요구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입법자료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 번역, 색인, 초록, 편집, 보고 및 기타의 준비를 하고 그 자료의 선택 또는 제출에는 당파적 관료적 편견에 구애됨이 없이 양의원 위원회 및 의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것.
3. 입법준비에 즈음하여 양의원 위원회 및 의원을 보좌하여 의안기초의 봉사를 제공할 것 단, 보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공되고 조사 및 입법고사국 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입법의 발의 또는 독촉을 해서는 안된다.
4. 양의원, 위원회와 의원의 필요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 또는 일반공중에 수집자료를 하여 이용시킬 것.

제16조 ① 이 국에 필요한 국장, 차장 및 기타의 직원은 정당에 가입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한 자에 대해 국회 의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관장은 더욱 이 국의 직원에게 양의원의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광범한 관련분야에 전문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전문조사원의 대우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1급 관리와 동일하게 한다.

제7장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의 봉사

제17조 관장은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도서관 봉사의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의 권능을 갖는다.

1.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의 도서관장은 이들의 부문을 각각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한다. 단 국가 공무원법의 적응을 받는자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에 따르며 또한 당해 부문의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의 도서관에서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목록법, 도서관 상호간의 대출 및 자료의 교환, 종합목록 및 종합일람표의 작성등을 포함하는 도서관 운영방침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국가의 도서관자료를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여하한 직원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에게 연보 또는 특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있는 도서관의 예산은 당해 각 부문의 예산중에 「도서관」비목하에 명백히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 비목 경비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을 각각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비목에 유용하거나 또는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은 당해 각 부문에 충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해 각 도서 관장은 그 직원을 국회직원법 또는 국가 공무원법 혹은 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해 임면(任免)할 수 있다. 당해 각 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기타의 도서관자료를 구입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입방법을 당해 각 부문의 장관 혹은 관장에게 권고하며 또는 직접 구입 혹은 수입을 할 수 있다.

제20조 관장이 최초로 임명된 후 6개월 이내에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현존하는 모든 도서관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이 된다. 또한 현재 도서관을 갖지 않은 각청에 있어서는 1개년 이내에 지부도서관을 설치한다.

제8장 기타도서관 및 일반공중에 대한 봉사

제2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봉사 및 수집자료는 직접으로 또는 공립, 기타의 도서관을 경유하여 양의원, 위원회 및 의원과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요구를 방해받지 않는 한 일본국민에게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시킨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 권능을 갖는다.

1. 관장이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수집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 건물 내에서 혹은 도서관 상호간의 대출로서 또는 복사 혹은 진열에 의하여 일반공중의 사용과 연구용으로 제공한다. 또한 때에 따라서 도서관 봉사의 개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봉사를 제공한다.
2.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도서관의 조직 및 도서관 봉사의 개선에 대해서 都, 都, 府, 縣의 의회, 기타 지방의회, 공무원 또는 도서관인을 원조한다.
3.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인쇄한 목록표 또는 기타 출판물을 타 도서관 및 개인의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이를 판매한다.
4. 일본의 도서관 자료자원에 관한 종합목록과 전국의 도서관자료 자원의 연계있는 사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의 목록 및 일람표의 작성을 위해 모든 방책을 강구한다.

제22조 우에노 공원의 국립도서관은 1949년 4월1일까지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이 되어 특히 동경도민의 사용에 제공되도록 유효하게 운용된다. 이 도서관은 가능한 한 속히 동경도에 이관하여 이관 전에 제정되는 법률 및 재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제9장 수집자료

제23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수집자료로서 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를 구입, 납본, 기증, 유증 혹은 교환에 의하여 혹은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으로부터 이관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의 장관은 그 부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관장이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용에는 충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기타의 도서관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0장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납입

제24조 ① 국가의 제기관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제기관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출판물(기밀 취급물 및 서식, 견본물, 기타 간이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등)이 발행됐을 때에는 당해 기관은 공용과 외국정부 출판물과의 국제적 교환용 또는 기타 국제적 교환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발행부수가 500부 이상일 때는 30부 그 발행부수가 500부 미만일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부 미만의 부수를 곧 국립국회도서관에 납입해야 한다. 단, 관장은 발행부수가 500부 이상일 때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30부를 넘어 50부를 넘지 않는 부수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부 미만의 부수를 납입시킬 수도 있다.

1. 도서
2. 소책자
3. 축차 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기술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
7. 녹음반 기타 소리를 기계적으로 복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기로 찍어낸 저작물
8. 전 각호에 실린것 외 인쇄술 기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문서나 도화로 복제한 저작물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한 출판물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그 재판의 내용이 초판 또는 전판의 내용에 비하여 증감 또는 변경이 없고 그 초판 또는 전판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에 납입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4조2 ① 都, 道, 府, 縣 혹은 이에 준하는 것의 제기관에 의하여 이들 기관을 위해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됐을 때에는 당해 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출판물을 곧 국립국회도서관에 납입한다.

② 시(특별구를 포함. 이하 등)町, 村, 혹은 이에 준하는 제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들 제기관을 위해 전조 1항에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됐을 때에는 당해기관은 동항에 규정한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부 이하, 町, 村,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경우에 있어서는 3부 이하의 부수를 곧 국립국회도서관에 납입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

제11장 기타의 자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납입

제25조 ① 전2조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출판물을 발행했을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제의 축적 및 그 이용에 돕고자 하기 위해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우량판의 완전한 것 1부를 국립국회도서

관에 납입해야 한다. 단, 발행자가 그 출판물을 국립국회도서관에 기증 혹은 유증하였을 때 또는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4조 제2항 중 「납입」이라고 있는 것은 「납입 또는 기증 혹은 유증」이라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을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관장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상금으로 교부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을 기증한 자 및 출판물을 유증한 자의 상속인에 대해 관장은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전일본출판물목록에 당해 출판물을 등목재한 것을 송부한다.

제25조의 2 ① 발행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물의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출판물의 소매가격 (소매가격이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 발행자가 법인일 때에는 전항의 과료는 그 대표자에게 과한다.

제12장 금전수입 및 지출과 예산

제26조 ①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 관하여 그 봉사 또는 수집자료에 관련하여 곧 지불할 수 있는 금전의 기증을 받을 수가 있다.

② 이 경우에는 양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국립국회도서관에 충당되어 있는 모든 경비는 관장 감독 하에 그가 임명한 지출관에 의하여 지출된다.

제28조 국립국회도서관의 예산은 관장이 이것을 작성하여 양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 예산을 심사하여 권고에 붙이고 또는 권고를 붙이지 않고 양의원의 의장에게 송부한다.

부칙

제29조 ①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1947년 법률 제84호 국회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0조 이 법률 시행일에 양의원의 도서관은 각각 분리한 도서관으로서의 존재를 중지하고 그 수집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에 이관된다.

제3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위에의 임명에 있어서 완전한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는 관장은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임시로 그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종료할 때 그 지위에 뛰어난 유자격자가 얻어지면 그 임시의 임명은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칙(1949.6.6 법률 194)

1. 이 법률은 194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제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와 개정 후의 제24조의 2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입을 면할 수 있다.
3. 이 법률 시행 전에 발행된 출판물의 납입 또는 납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55.1.28 법3)초

1. 이 법률은 제22회 국회의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

문부성 설치법(초)

1949년 5월31일 법률 제146호
최종개정 1981년 6월11일 법률 제80호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문부성의 소관 사무의 범위 및 권한을 명확하게 정함과 함께 소관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족한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3조 1. 국가행정조직법 (1948년 법률 제120호)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부성을 설치한다.

2. 문부성의 장은 문부대신으로 한다.

(문부성의 임무)

제4조 문부성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 및 보급을 도모함을 임무로 하고 이들 사항 및 종교에 관한 국가의 행정사무를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문부성 조직령(초)

1952년 8월30일 정령 제387호
최종개정 1981년 6월11일 정령 제231호

내각은 국가행정조직법 (1948년 법률 제120호)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정

령을 제정한다.

제1장 본성의 내부 부국
제2절 초등 중등 교육국

(소학교 교육과)

제8조 소학교 교육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교육과정 문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5. 학교 도서관법에 관한 사무(재무과에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를 처리하는 일

제3절 대학국

(대학과)

제16조 대학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학교육에 관하여 다음의 사무(타과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를 행하는 일
   가. 교육과정, 편제 기타 교육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의 실시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나. 전문적 출판물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일
   다. 연구집회 기타 모임의 주최 또는 이것들의 참가에 관한 일
2. 국립학교 (제11조 제1호의 2에 정한 학교와 제20조의 제4호에 정한 연구소 및 기관은 제외)에 관하여 예산안을 준비하고 타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는 일
3. 대학(단기 대학을 제외)의 운영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4. 대학 학부가 행하는 정규과정으로서의 통신교육 (제17조 제9호에 규정한 것은 제외)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5. 대학원 및 학위에 관한 일
6. 대학 입학 시험에 관한 일
7. 국립학교 설치법 (1949년 법률 제150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
8. 대학기준분과회에 관한 일

(기술교육과)

제17조 기술교육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학에 있어서의 기술교육 및 단기대학에 있어서의 교육과 더불어 고등전문교육에 관하여 다음의 사무(의학교육과, 교육과 및 학교보건과의 소관에 관한 것은 제외)를 행할 것.
   가. 교육과정, 편제 기타의 교육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들의 실시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줄 것. 단, 대학에 있어서의 기술교육에 관계되는 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에 관한 일반적 기준 범위 내에서 행한다.
   나. 전문적 출판물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일
   다. 연구집회 기타 모임의 주최 또는 이것에 참가하는 일

2. 기술교육에 관계되는 대학 또는 대학 학부 및 이것들에 부속하는 교육연구시설과 국립단기대학(의학교육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및 국립고등전문학교에 관한 일 (타 부국에 속한 것은 제외)
3. 단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4. 고등전문학교의 설치, 폐지, 설치자의 변경 등의 인가를 행하는 일
5. 고등전문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기획하는 일
6. 단기대학 기준분과회 및 고등전문학교 분과회에 관한 일

제3절의 2 한술국제국

(정보도서관과)

제22조 정보도서관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술에 관한 정보처리 체제의 정비에 관하여 기획하고 또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2.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일
3. 연구결과의 반포를 위하는 보조에 관한 일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부속도서관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시설에 대하여 학술진흥을 위하는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5. 대학부속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아울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6. 국문학 연구자료관 및 국립대학의 부설 연구소에 부속된 학술정보에 관한 연구시설에 관한 일
   (타 부국에 속하는 것은 제외)
7. 국립대학부속도서관, 국립대학의 학부에 부속하는 연구시설 등에 있어서 학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일
8. 학술용어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일
9. 연구사업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일
10. 학회에 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11. 학술정보자료 분과회 및 학술용어 분과회에 관한 일

(국제교육 문화과)

제22조의 3 국제교육 문화과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 또는 문화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국제 교류에 대해서 기획하고 아울러 추진을 도모할 것
   (타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2. 교육 또는 문화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국제적인 사업 및 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락하고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타과에 속하는 것은 제외)

제4절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제24조 사회교육과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사회교육진흥에 관하여 기획하고 연락 조정을 하는 일
2. 사회교육에 관하여 다음의 사무(타과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를 행하는 일
   가.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일
   나. 연구집회, 강습회, 전시회, 기타 모임의 주체 또는 이것들의 참가에 관한 일
   다. 교재 등의 해설 목록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일
3. 도서관(학교도서관을 제외), 박물관, 공민관, 기타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일 (타과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4. 국립과학박물관 및 국립사회교육연수소에 관하여 예산안의 준비 기타 부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는 일
5. 학교개방 및 사회교육의 강좌 등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6. 사회교육으로서의 통신교육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7. 사회교육으로서 독서 지도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8. 사회교육주사,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과 학예원이 되는 자격인정에 관한 일
9.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의 주사 기타 사회교육관계 직원의 연수에 관한 일
10. 사회교육관계 단체에 관한 일 (타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11. 기타 사회교육의 향상과 보급에 관하여 원조와 조언을 주는 일 (타과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12.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 도서관법 (1950년 법률 제118호) 및 박물관법 (1951년 법률 제285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
13. 사회교육 심의회에 관한 일, 단 청소년 교육분과회, 교육영화 등 심사분과회 및 교육방송분과회에 관한 일은 제외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 街 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752) 4864・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한국십진분류법〈제 3 판〉 (제 1 권 본표・제 2 권 상관색인)	25,000원	비도서자료〈이론과 실제〉	5,000원
한국목록규칙〈제 3 판〉	6,500원	고서분류목록법(상)	4,500원
도서관학개론	4,500원	한국도서관기준	3,500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I)	2,500원
한국목록규칙해설	4,500원	선정도서목록(IV)	3,000원
도서관전산화입문	6,000원	한국도서관통계(1984)	4,000원